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정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92

발의연월일: 2025. 3. 17.

발 의 자:황정아·박지원·박용갑

이정헌 • 백승아 • 이수진

고민정 · 조승래 · 김성환

최민희 · 김남근 · 서미화

위성곤 · 김 현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부에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·개발하고 과학기술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

그러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과학기술분야에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으며, 특히 R&D 투자 확대와 경제성장으로 급증한 과학기술 인력이 은퇴 연령에 임박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퇴직 후에도 그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도록 하고,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인력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25조의2 신

설).

법률 제 호
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5조의2(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) ①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퇴직 후에도 그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퇴직 과학기 술인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,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개 정 안 제25조의2(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) ①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퇴직 후에도 그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1항에 따른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지정하고,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	대통령령으로 정한다.